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36
----------	-------

발의연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김영호 · 김경협 · 최재성  
김민기 · 윤후덕 · 김삼화  
추혜선 · 김병기 · 박범계  
김현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량, 터널, 항만, 댐, 상수도 등을 지정하였으나, 전력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전력구 및 통신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하여 서대문구를 비롯하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유·무선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이 멈춤. 이로 인하여 상가의 카드 결제를 비롯하여 현금지급기, 병원 내 환자 진료 등이 멈춰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음.

이에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전력구 및 통신구를 시설물로 등록시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200미터 이상의 전력구 및 통신구

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50미터 이상의 전력구 및 통신구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p> <p>가. ~ 사. (생략)</p> <p><u>&lt;신설&gt;</u></p> <p>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p>	<p>제7조(시설물의 종류) ----- -----.</p> <p>1. ----- ----- ----- ----- ----- ----- ----- ----- -----</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u>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200미터 이상의 전력구 및 통신구</u></p> <p>2. ----- ----- ----- ----- ----- -----</p>

<p>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사. (생 략) <u>&lt;신 설&gt;</u></p> <p>3. (생 략)</p>	<p>-----</p> <p>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 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 된 50미터 이상의 전력구 및 통신구</u></p> <p>3. (현행과 같음)</p>
--	---